

의안번호	제 36 호	의 결 사 항
의결 년월일	2004. 9 . .	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2004. 9. 7.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4. 9. 7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지원조례를 폐지함.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(안)

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의료보험법

第12條(보험자)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으로 한다.

부 칙

第2條 (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)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해산 된다.

국민의료보험법

第9條 (보험자)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부 칙

第2條 (다른 법률의 폐지)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이를 폐지 한다.

국민건강보험법

第12條(보험자)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]

부 칙

第2條 (다른 법률의 폐지)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第3條 (공단의 설립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.

※ 참고자료(관련법 연혁)

의료보험법

- 제정 1963. 12. 16
- 개정 1997. 12. 31(지역의료보험조합해산)
- 폐지 1999. 2. 8(국민건강보험법 제정)

국민의료보험법(공무원·교직원 및 지역보험 통합)

- 제정 1997. 12. 31(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)
- 폐지 1999. 2. 8(국민건강보험법제정)

국민건강보험법(전의료보험 통합)

- 제정 1999. 2. 8(현행법)